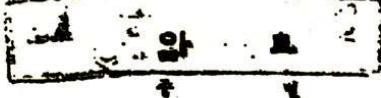


대한민국 외무부



착신전보 646

번호 : JK-02593

일시 : 221445

수신인 : 외무부 장관 국무

금 2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약 1시간이 걸쳐 일본 고사까 외상과 회견하였음을.
기 이에보고하여 고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벌로로 박외장에 본관에 광하여 보고가 있을 것임
을 확인함.

• 기 •

출석자. 일본측 : KOSAKA

외상.

TANAKA C.I RYUJI 외무차관.

KA-AIURA SEIICHIRO 외무정무차관.

ISEKI YUJIRO 아세아 국장.

일반문서로 재분류(662차는)
중고우

4, 6, 30 SF

한국측 : 고종필 중앙정보부장

대외항 주일 대사.

최영희 차사관.

석정선 중앙정보부 제 2국장.

- 본회담에서 고정보부장은 동남아 제국방문소고에 대하여 말하였음.
- 한일회담에 광하여서는 고사까 외상은 정치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에 이외가 없는 것같이 말하였으며 이세끼 국장은 서울과 동경 양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였음.
- 고사까 외상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고 한국측이 이에 응수할 것을 원한다고 하였으며 고부장은 벌 실질적 가치없는 설문제를 일본이 그렇게 심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일본의 희망을 박외장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하였음.

119

수신시간:

검인

1382

119

0217

외신과

4. 미국수출문제에 관하여 물의학였던 바 고사기와 의상은 한국미를 수입하기로
결정된듯 말하였으나 그수량에 대해서는 언급하기를 회피하였으며 작 21일에
그노 능상은 국회에서 아동복으로부터 한국미 수입에 대하여 심한 공격을 벌였다고
말하였음.

주일대사

0219

180

의신파

1583

13

III 級秘密
CONFIDENTIAL

6
100

韓日外相會議 綜合報告

(1962年3月)

검토월(1963.5.20.)

검토월(1963.11.15.) 92

1966.12.31.에 이어
의회 통일부로 재분류됨

一般文書로 재분류
1966.12.31.

一般文書로 재분류(韓日會談)
(總結時)

一般文書로 재분류(66.12.31.)

外務部

III 級秘密
CONFIDENTIAL

1967

0628

332

目 次

一 今次外相會議에 對한 우라의 基本態度.....	1
二 日本側의 態度.....	3
三 會談內容의 要約.....	?
1. 一般請求權問題.....	9
2. 平和兼問題.....	15
3. 法的地位問題.....	17
4. 船舶問題.....	20
5. 文化財問題.....	22
6. 別個問題.....	23
가. 獨島問題.....	24
나. 駐韓日本代表部設置問題.....	25
四 今次會議에서 얻은 經驗.....	31
五 次期政治會談開催時期與場所	

333

1968

0629

問題에 대한 考察 38

附錄

I. 發表文 43

1. 崔外務部長官 出發聲明書
(於首爾) 43

2. 崔外務部長官 到着聲明書
(於東京) 47

3. 崔外務部長官 開會辭 51

4. 小坂外相 開會辭 56

5. 共同聲明書 60

II. 會談關係 諸報告 63

1. 第一次會議 會議錄 64

2. 崔長官～池田首相 會談內容
報告 105

3. 首席代表會談（第一次）

1969

334

內容報告	120
4. 第2次會議 會議錄	114
5. 首席代表間 會議(第二次)	
內容報告	126
6. 請求權 領教 提示에關司 請訓	130
7. 第三次會議 會議錄	132
8. “해리만” 次官補外의 會 談內容報告	136
9. 第4次會議 會議錄	143
10. 第5次會議 會議錄	147

(音)

335

1970
1970.1.1

0630

~24~

는 印象을 줌으로써 韓國側主張에
屈服하고 있다는 非難을 免하려
하느 意圖이였을지 모른다

(3) 또한 이 데한 問題를 提起함으
로써 韩國側에 心理的 負擔을
주어 協商에서 有利한 立場에
나타는 策略이였다

자. 独島問題

日本側은 “이 問題에 對하여
主領有權을 今次 會談에서
決定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하는
原則이라도 定하고자 하였으나
우리側은 独島가 “歷史的 地理
的으로 我國領土의 一部인것”이
廉然히證明되는 것이라고 反駁

1994....

359

七

外

하고 따라서 우리가 · 國際司法裁判所에의 提訴에는 懶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問題가 韓日關係正常化에 障碍物이 되어 서는 안 된
다고 強調하였다.

앞으로 이問題에 對한 우리
의 立場은 繼續 國際司法裁判所에의 提訴에 同意하지 않고
嚴然히 우리 領土의 一部分라는
立場을 堅持하면서 日本側과의
協商에서는 되도록 이問題에
對한 言及을 避하는 同時 國
交正常化後에 서로 正常 外交
經路를 造하여 說明할 수 있을
것이 라는 余地를 남겨둔다

4. 日本의 駐韓代表部設置問題

1995.

360

0643

-64-

1. 韓日外相會議第1次會議

會議錄

1. 時日場所：1962年3月12日

午前9時～12時
1962.3.12. 9:00 ~ 12:00

2. 參席者：韓國側：

外務部長官	崔德	蔚煥
駐日大使	裴瓈	淳澤
外務部政務次長	文善	達
駐日代表部參事官	崔英	
外務部亞洲課長	嚴永	

日本側：

外務大臣	小坂善太郎
首席代表	杉道助
外務省亞細亞課長	伊爾佑二郎

398

2033

四 國際 夾產主義者는兩國의
永遠存 在間을 制策斗고 있음
此 兩國의 提携이 对是 罷은
認識은 앞으로의 多大甚 障害
斗 難間을 打開해 나갈수 있
을 것임

八 真正한 이치이 될수 있는 美
德量 마련하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임

(人事外 끝난 다음 実質的
인 討議의 들어가기前의 “
小坂、外相은 独島問題斗 日
本의 駐韓代表部 諸置問題의
内斗여 言反斗及음)

小坂 外相： 独島問題斗 論斗여

401

2036

0664

이자리에서 討議하되도 解決되지
않으리라고 生覺하므로 于先 여
기이서는 同 問題를 國際司法裁判所
의公正한 裁定을 第3者에게
調整을 依頼하는것이 좋으리라고
生覺한다

崔長官： 独島는 歷史적으로
나 國際法上으로나 我國의 領土
임이 判明되어 있으며 이問題는
여기에서 論議될 情其의 것이
아니나 外相은 日本國民의 感情
을 복동우기 為하여라도 独島問
題을 討議의 對象으로 하자고
提議하나 오리려 이 問題外 最
終設陪비 온 雜宗問題 解決하라
402

一大 支障을 招來할가 念慮된다.
貴國은 貴國의 國民의 感情을 重
要視한다고 하지만 우리 政府도
亦具 國民의 感情을 無視할수 有
으며 國民의 輿論과 國民이 願望
는바에 따라 政策을 遂行하여 나
가야 할 義務가 있다

小坂 外相 : 여기에서 本 問題
에 關하여 資料를 相互商에 提示
하고 討議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荷國이 第3者의 國際司法裁判所에
이 問題를 双方에서 提訴하던지
또는 日本이 提訴하면 貴國이 應
訴을斗는 形式으로 이 問題를 處
理하자는 것이다 懸案 問題가 解決

~
되리도 領土問題가 解決되지 않
으면 國交正常化元 無意味한 것이다
라고 生覺한다

外

七

崔長官 이 問題를 가지고
曰可曰否하는 것은 會談의 零國氣
를 祖害하는結果가 되고 生
覺한다 비록 적은 無人島과 할
지라도 畢然司 我國의 領土인以
上 우리政府는 이것을 守護하지
않으면 않된다

小坂 外相： 韓國은 獨島가
自己領土라고 生張하고 있으나
日本은 還한 歷史的으로나 其他
의 資料에 依하여 自己領土라고

404

2039

민고 있다. 이와 같이 蘭國은 祖
국되는 主張을 하고 있으며 이
問題는 언젠가는 解決되어야 하
며 이것없이는 國交正常化도 真
正한것이 되지 못하므로 그것을
未然히 防止하는 意味에서 國際
司法裁判所에 提訴하자는 것이다.

崔長官：只今 小坂外相은
이 無人島이 對처서 造成은 間心
을 갖고 이 問題가 解決되기 前
에는 國交正常化를 하여도 無意
味하다는 놀라운 말을 하였는 바
彼此外 大國民的 幹持를 가지고
이 저은 섬이 間心이 不必要外
기 큰 間心을 갖지 않은것이

自 工 事 委

稿

領

為 民 獨

責 任

誤

本

國

對

遇

日

韓 國

對

大

國

韓 國

對

中

國

韓 國

對

民

國

韓 國

對

國

國

韓 國

對

國

國

韓 國

對

國

國

韓 國

對

國

國

韓 國

對

國

國

韓 國

對

國

國

韓 國

對

國

國

韓 國

小坂 外相

領 土 民 主

主

已

正

結論：期하려는此際에는 이는 問題
를 解決해 놓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問題가 남을 것이다

崔長官：國安外：正常化
以後에도 両국이 이 問題를 外
交 경로를 通하여 交渉할 수도
있는 것 아니 만큼。只今は 以重大
한 問題의 討議를 始作하는 것들이
本土의 責國을 詐問하니 沟談의
目的에近。附合思斗。

小坂 外相：國際司法裁判所에
跟蹤하는 問題와 이 問題唯 問
題의 確定을 미리 는 問題와는 雖然

本邦的 2042 三月 三日

407

2042

11/11

0667

三 刑罰의 것이다. 國際司法裁判所의 刑決이 내리기 차지에는相當한 時間이 걸릴 것이다. 다만 國支正常化前이라도 이 問題를 國際司法裁判所에 提訴한다는 原則에 合意하였다 것이다.

崔長官：本人은 이 問題에 對한 具體的 准備도 確正 確定된 詔令도 가지 않았지만 결판으로 三 단판 資見을 本國政府에 报名하여 傳達도록 하겠다.

小坂外相：韓國의 駐日代
表部外事東京에 处元래 日本의
代表部은 서울이 없어 여러가지

II 금 비밀
SECRET

1950년 11월 1일



수신 : 중앙정보부장

관리 번호 1503

발신 : 국가재안 회고회의 의장

제목 : 대입 절충에 관한 문령

31
정부
2294
이
의
한
修
25
月

지난 10월 20일부터 22일 까지인 과학의 대입 절충의 성과를
시작하며, 아울러 괴국도 11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유티파 외상
과의 차기 회담에서는, 전반적으로 지난 10월 17일 거의 운명에
따르되 속히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절충하시기 바람.

기

1. 전반회의 내용의 확인

지난 10월 20일의 규마와 유티파 외상과의 회담 내용을 확인
하기 위하여 그후 주일대표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대사 작업을
실시하였는니, 쌍방의 기록에 차이가 있으므로, 대사 결과를
주일대사로 부터 보고 받은 후, 공판 회담에서는 차이점에 대하여
유티파 외상의 확실한 복안을 다짐할것.

2. 친구권에 관하여

가. 영국을 독립 속가금 또는 경제면역으로 만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친구권에 대한 문제 내지 노상으로서 자율될 것이라는 것을
느낄수 있는 표현이 되어야 한것임을 강조할것.

2114

II 금 비밀
SECRET

22
22
22
22
밀
SECRET

- 2 -

4. 지불 날짜에 있어서 다음은 순번제와 무상제의 합계액이
차관보다 더액이어야하며, 또한 이들의 총액이 6억불
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다시 강조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강조하고, 지난번에 오미아 외상이 시운한 무상 공여
액들은 과거의 일속 저시액보다 훨씬 진보된 액수이며,
논의의 대상이 될수 있는 선까지 도달되었다고 인정되니
이 액수를 우선 일속이 회답에서 공식으로 제의하는것이
앞으로의 회답을 속진시키는 경기가 될것임을 강조할것.
실제 고성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선을 기준으로 고성할것.
2년치 2.6억불 (순번제 +무상제) + 2.6년치 3억불

(차관) - 6 억 (총액)

단, 이 경우에 있어서 무상제가 3.5 이하로 내려올때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자시할것.

- (1) 0.A 부채액을 일속으로 하여금 조건 서킬것.
- (2) 지불 기간을 최단으로 하고 이자율, 가치기간, 산화기간
등을 가장 특별적인 (특별히 유이한) 조건으로 할것.
- (3) 지불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무상제의 적어도 반액을
연금 (마늘) 으로 지불할것을 요구할것.

~~22
22
22
22
밀
SECRET~~

2115

(5)

다. 기초 기간이 끝나서는 5년 이내로 남겼을 주장을할 것.

(제 2 간 5년 내지 10년)

마. 청구권 밖에 있어서는 오픈·아웃도의 미불금을 조각하는 것이 쌍방 간의 금액 차이를 조절하는데 용이한것임을 강조할 것.

마. 지금에 관하여는 말로만 한국족이 국고 정상화 이후에 논의하자는 일들이었는데 대하여 일속에서 금액을 물리는 데 필요하며 또는 유통의 유비란 조건이나 법으로하고 하기에 한국족은 회당의 아금을 축잔하기 위한 성의에서 일체의 입장을 일로하여 차관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지난번 오하라 회장에게 표시하였는데, 일속은 지금에 있어서는 차관은 별도로 국고 정상화 후에 취급하겠다느니 또는 씨령을 정하지 말자느니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해하기 곤란한 태도임을 지적할 것. 동시에 아속도로서는 상업 베이스에 의한 차관이 아니라 청구권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보충적 방법으로서 정부대 정부 차관을 고려하는 것이니 그 예수가 본연히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조건도 육여정으로 유이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할 것. (이자율, 무이자 또는 3.5% 이하, 개시기간 5년 이상, 상환기간 25년 이상, 수입기간 5년 내지 10년 이내)

3. 어업 문제에 관하여

4. 일본의 청구권 문제에서 성의를 표시하면 한국은 어업문제에서



- 4 -

손속선은 노이겠나는 기분 방심에 드락이 놀음을 많이고,
또래 사이에선 방심에 입과관 축걸단을 축걸동입에 10년 이상을
두고 지켜온 평화선에 골라여 신축성을 보이자니, 과거기과
이나 수간계의 의견을 조정하는데 다소의 시도를 모아고 있
음을 설명할것.

4. 일본의 우·국민이나 과거 기관에서는 아직 친구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성의를 보였다고 보고 있지 않으나 오이와
내국속이 부당히 낭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
임으로 일본족이 친구권 문제에 있어서 성의를 보이려는 것은
어업문제의 해결도 추진하는 결과가 될것임을 지적할것. 이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지난번 11월 미야기 외상이 고하에게 서사
하였던 무사용역 의수를 확인하기를 깨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일속이 한국속으로 하여금 어업문제에 있어서의
양보를 추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한국내의 과거자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 키는 효과를 낼것임을 지적할것.
5. 일본족은 제5 다이오마루가 석방된 약을 지적하면서 다른
나프 어선의 석방도 요구할 가능성성이 있는데, 이어판 요구가
있으면 제5 다이오마루 석방 결정이 특별한 고려에서 이후 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일본족의 요구가 과도한것임을 지적할것.
외당 진행중에는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을 삼가되어야 할것이므로

II 금 비밀
SECRET

2117

III. 금 바 밀
SECRET

- 6 -

같은 이유로 한화상을 칭법이지 목도록 노숙할 것을 요구하고
금후 노로 사업 선이 발견될 시에는 나포할 것과는 전쟁할 것.

4. 독도 문제

일축에서 독도문서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문계와 한일회당
의 전단문제가 아님을 지적하는 등시, 일축이 이 문서를 제기하는것은
한국민에게 일본의 대한 침략의 결과를 상기시킴으로써 회당의 분위기
를 경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할 것.

5. 기타

오늘 이자 외상과의 회담 결과 여하에 따라서 만약 규마가 일본에
여행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체일 기일을 연장하여도 가능. 끝.

1966/6/5/6/6/6
의거 일한용서로 체류유보

비로 모시고 체부류(회) 담 중호사)

III. 금 바 밀
SECRET

2118

II급 비밀
SECRET

Conf 649-05

한일대정제 495 호

1962. 11. 13

수신 : 외무부 장관

관리
번호 1505

제목 : 제 2 차 김부장. 오미라 외상 회담록

1962년 11월 12일 15:00 시부터 18:30 시까지 일본 외무성 대신실에서 개최된 제 2 차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오미라 외상과의 회담 내용에 관하여 김종필부장께서 회담후 설명하신 바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는 동시에 우선 풀오반 사항을 건의합니다.

검토필(1964.6.30.)

아래

- 회담시간은 원래 15:00 시부터 16:00 시까지 3 시간이 예정되었는 바 30분을 초과하여 3 시간 반이 걸렸으며 그중 약 2 시간 반이 청구권 문제로 소비되었음.
- 오미라 외상은 각문제 토의에 있어 별첨과 같은 메모를 기준삼어 설명하였음.
- 현안문제 별 토의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청구권 문제

(가) 금액 및 조건 (지불 기한 등)

본 문제에 관하여서는 양국 최고수뇌부 보고건의하여 결정을 볼때까지는 국비에 부치기로 하였으며 회담수석대표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하였음. 따라서 김부장이 직접 최고회의 의장에게 보고할것임.

(나) 명목 문제

오미라 외상은 별첨문서 제 2 페이지에 적힌바와 같이 국고 청상을 축하하고 우호친선을 기원하고 한국의 민생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2123	금·단과 장·국 장·특별보좌관 사무처·관·장·관	기·공·이·
II S E C R E T	기밀	기밀

외하여라는 명목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음.

이에대하여 김부장은 반대를 제기한 후 대안으로서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에 000불을 지불하며 또 000불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이로써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자고 하였던 바, 오히려 외상은 연구 내용만한 만이라고 말하면서 전문가에게 연구시기겠다고 하였음.

(2) 어업 및 평화선 문제

오미타 외상은 일측으로서는 구체안이 완성되어 언제든지 제출 활용의가 있으니 한국측에서도 즉시 구체안을 작성 제출하여 달라고 하였음.

이에대하여 김부장은 "각각 구체안을 제출할 용의는 가지고 있으나 청구권 문제는 진첩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1) 아측의 3 개원측을 설명하였으며, (2) 자원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잡정적인 협정을 체결할 것을 시사하였으며, (3) 평화선은 국방선으로 남게 된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양측은 어업문제에 관한 토의를 예비접촉에서 추진시키기로 하였음.

(3) 법적지위 문제

오미타 외상은 회담 전체의 공기를 일층 좋게 하는 취지에서라도, 법적지위 협정의 토의를 더욱 촉진하고 합의에 도달하면 다른 협정에 앞서 본 협정의 가족인을 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음.

김부장은 법적지위 문제에 있어서는 ,

2124

2125
- 3 -

- (가) 재일교포의 특수한 배경에 감하여 제3국인보다
특별한 지원과 치우를 주어야하며,
- (나) 선전법주의 반인은 사상 기록 이유에 의하여
그 일부가 법정에서 배제될수 있음을
주장하였던바, 오히려 외상은 법을 가에게 연구해 하겠다고 하였으며,
양측은 합의를 추진하여 조속 해결할것에 합의하였음.

(이하 다음 페이지에 계속)

2125
[]

2125

2125
~~2125~~
[]
S E C R E T

II
S E C R E T

(4) 선박 문제:

오히라 외상은 (1) 한국측에 나포된 일본 어선이 이으로로 이를 살소하거나 (2) 법을 배석에 사이가 있고 사실 관계의 확인도 곤난 하니 정치적인 해결을 하자는 등을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김부장은 살소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일본은 한국이 요구하는 돈수에 해당하는 신조 선박을 반환하라고 하였음.

(5) 문화재 문제:

오히라 외상은 일측에 반환 의무가 없으나 양국 간의 문화 교류 촉진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국유 문화재를 증여하겠다고 하였으며, 김부장은 1957년 12월 31일자 「오늘 스테이트먼트」의 선언에 따라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음.

(6) 기본관계:

김부장이 조약 형식에 의한 것을 주장하였던 바, 오히라 외상은 조약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영토 조항에 난점이 있다고 말하였음. 이에 관련하여 현재 행정적 지배 하에 있는 지역 및 앞으로 행정적 지배 하에 들어올 지역으로 하는 등의 표현 방법이 이야기 되어 서로 연구 하기로 하였음.

(7) 특도 문제:

오히라 외상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 일본이 제소하였으니 한국 측이 이에 응소할 것이라는 것을 국고 정상화 시에 약속 하여 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김부장은 한일 회담의 현안 문제가 아니며 한국민의 감정을 경화시킬 뿐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이에, 오히라 외상은 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설명하고 다른 해결

2126
II
S E C R E T

활안이 없겠는가라고 하였는 바, 김부장이 제3국의 조절에 다짐이
어떻겠는가라고 시사함에, 오히려 외상은 생활해볼 만한 안이라고 하면서
제3국으로는 미국을 시작하고 연구해 보겠다고 하였음.

(김부장의 의도는 국제 사법 재판소 제소를 위한 일측의 강력한
요구에 대하여 몸을 피하고 사실상 독도 문제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작전 차의
위한 태안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생각됨.)

(o) 정치회담:

회담의 연내 학경이 오망되는 바, 정치회담은 필요 한 때에
언제든지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개최시기는 앞으로의 아미전총의 전전
여부로 결정될 것이라는 것을 상호 양해하였음.(조인 및 일본국회 인준
시기는 전에 합의한 것을 재확인하였음.)

4. 건의:

(1) 곧번 회담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결말을 본 것은 아니지만
결말에 가차운 접근이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헌안의 토의를 촉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현재 토의가 개시되어 있지 않은 선박 및 문화재
등의 기타 헌안에 관하여도 준비를 갖을 것을 건의함.

(2) 문인구 대표는 11월 15일 입시 귀국하게 되는 바, 법적지위
문제의 토의를 중단시키지 않고 나아가서는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상 대표를
즉시 파견할 것을 건의함.

(3) 청구권의 해결과 회담의 전반적 촉진을 위하여 어업 문제의
토의를 촉진시켜야 되는 만큼, 지침근 대표가 "한일 잠정 어업 협정안
(가칭)"을 단시일 내에 작성하여 가지고 올 것을 건의함.
2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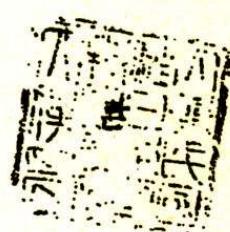
II급 ~~SECRE~~ 1

II
S E C R E T

- 6 -

유 침: 오하주 외상이 회담 시에 사용한 메모 사본 1

주 의 대 사 배 10



1966. 2. 3.에 예고문에
의거 일반문서로 재분류됨

2125
[
II
S E C R E T
]

167

1963年11月12日の所蔵地 第二次金銀交換

中央情報部専門 太平洋相合議の付日銀の
手続地に於て

（一）被請九九問題

（1）金額

（2）方式

國交正常化に関する取極等うち下記の
趣旨の条項を以此て解決することを提議
す。

第一項 日本国は 日韓(圓)交正常化を
祝し兩國間の反日親善を示す爲め韓國に
於ける民金安定と經濟發展に寄与するため
OIMドルに 等しい140億ドルを有する日本人
役務者より日本國の資本財を供与すること
とする。

第二項 兩國的國は 年和解約第十條に基
づく韓國までは韓國圓先りは本國または
日本圓先に立するまでに 請求権を完全に終
了終了して解決されたことを確認する。

2. 漢事問題

「日本側におりては具体的な協定書を完成しておらず、それを提出する用意が出来ぬ。」
韓國側におりても、直ちに具体的な協定書を提出せられたら。

(日本側ヒロハス 日本と第三回) ヒラ漢事
關係に悪い準備となりとなつた、悪い準備で
及ばずようなら方針は採用できなか
から、おそれ、今後、混戦にありては
どうぞ、隣り韓國側の立場を考慮する
用意がある。

3. 在日韓国人の政治的地位(附題)

(漢事記の問題、対日議論の大本筋には、
近づき、また、漢事は既に(既に双方から)
具体的な協定書が提出せられ、お手頃の
本権化した段階にあります) 会談全体の
空氣を、二層よくする趣旨から、日本側ヒロハス
ニ古的の地位協定の修正議定をさらに促進し
話し合ひか、まとまりかねば、(後、10月15日に述べて)
本協定は彼主導で、テルムノ内閣の手による。

4. 研究題の問題と文化財

(1) 船舶の問題

日韓双方が該事件上、主張には隔たりがあり
また、事実(先)係の確立も極めて困難なこと
政治的解決を図ることか、あるいはまと
めると。

(2) 文化財問題

日本側としては、文化財は本国に返還し
たければ「返送」を、ソラ、國際法上、索割りや
賃借ではなく、從って日本へ戻る韓国文化
財を「返還」する義務はないと考えられる。
これなり。但し、本義務とは別に、國際法上
はなれ本国(南)文化文庫は、返還の
一要素として、ある程度の国際文化財が
「贈与」と考査される用意である。

5. 手島問題

この種の法律的紛争は、国際司法
裁判所の公正な判断による解決をまつた。

最も適当であるが、なぜか“國文正書化文”と
附された。西子と併記する国書類は、何時何處
の書物かは、必ず初集をみる。眞幸の復讐で
國文正書化後（本件は國書可否審査所）
提出にあつたことなどをれば、とりあえず
是非手元にはない（提出者等の名前は
國文正書化後となる）

金銀土糸等に使用する種類判別、金剛
(引金等多岐)とも明りかないと云ふ。此の辨別
判決まで少なくとも五年内外にはひどく多く
行島に実する事決り入るを國文正書化後
相当期間経過してからと存思いたりてあり
差しより双方の國の感想をより深むる
おとくななどといふ事は、3種類に分れる。

한일대(정) 제 557 호

1962. 12. 10.

수 신: 외무부장관

46, 30. Secy



제 목: 한일 회담에 관한 일측의 기본 입장에 관한 문서 상당

1. 금 12월 10일 14:30시에 "가우" 회관에서 본작은 일본 외무성 우시로구 아세아국장과 면담하였는바, 그 자리에서, 우시로국장은 본작에게 별첨 사본과 같은 한일 회담에 관한 일본측의 기본 입장을 수고하였읍니다. 동문서는 한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이세끼 대사가 금일 한국으로 휴대하고 간것의 사본이라고 합니다.

Q 2. 당 대표부로서는 전기 일측 제안을 검토한 후 조속히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3. 금일 우시로구 국장과의 면담 석상에서, 전번 오하타 외상이 김부장에게 보낸 청구권 문제에 관한 공한증 청산 계정 처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측의 뜻을 우시로구 국장에게 문의하였면 바, 우시로구 국장은,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현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처리해야 할 문제이니 그 처리 방법을 연구 해보아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를 더 보고합니다.

1962.12.10 주일대사의 흔적 | 주 일 대 사 배 의 흔적

1122

예고문: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료후)



0337

284

■ 竹島問題

第2回大平・金会談において金部長が提案された第三國の調停に任すという考えは、本件の円満解決に対する韓国側の歩み寄りの努力の現れとして、日本側としても多とするところであるが、他方、調停に任すといふだけでは、調停がいつまでも成り立たず現状が継続するおそれがあるとの日本国民の不安を解消す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いわば両国の主張を折衷した形で(1)国交正常化後例えば1年間日韓双方の合意する調停機関による調停に付し、これにより問題が解決しない場合には、(2)本問題を国際司法裁判所に付託することとするのが最も適当と考える。

0349

295

1133

III급 비밀
CONFIDENTIAL

한일대(정) 제 559호

1962. 12. 11.

관리
번호
1661

수신: 외무부 장관

제목: 한일회담에 관한 일측의 기본 입장에 대한 대표부 의견

(연: 1962. 12. 10. 한일대(정) 제 557호)

연으로 보고한바 있는 일측 제출 문서에 관하여서는 일측이
제 18차 예비 접촉에서 공식으로 확인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 발언을
한만큼, 다음 예비 접촉 석상에서 그 이에 대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당 대표부의 의견 및 아측이 취할 입장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오니 참고하시고 조속 훈령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찰물: 한일회담에 관한 일측의 기본 입장에 대한

대표부의 의견서

1962. 12. 3.
의거 일반문서로 전문류

1962. 12. 30. Secy

주 일 대 사 배 의

1134

예고문: 일반문서로 재분류 (한일회담 종료후)

246

0351

III급 비밀
CONFIDENTIAL

● CONFIDENTIAL ●

특도 문제

1. 김부장은 제 2 차 길. 오미타 회담에서 제 3 국에 의한 조정을 하나의 해결방안으로 시사하였는 바 그 진의는 본 문제를 대부분 해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것이 아니라, 일본측이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를 강경하고 진오하게 주장하여왔고, 가공적 현상유지를 위하여 독도에 대한 아국의 영유권을 기성 사실화하자는 데 있었던것으로 알고있음.

2. 김부장이 이를 시사한 또하나의 이유는 일본의 수상이나 역대외사가 국회에서의 정책집의에 대한 답변등을 통하여 국교정상화시에 본문제를 일관해결하겠다는 언성을 준 상정을 참작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구상하였던 것임.

3. 김부장이 오미타 외상에게 시사한 방안은 국제법상의 거중조정 (중개 Mediation) 이었으나, 일본측에 의하면 일본은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 즉 국제법상의 협의의 조정 (Conciliation) 을 구상하고 있는것으로 보임으로 김부장이 시사한 방안에 대한 "석상의 차이가 있는것으로 Conciliation은 Mediation 보다 조정효과가 강력한것으로 한 단계에서 아죽으로서는 "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은 동의하기 힘든것임.

4. 또한 일본이 제 2 단계로서 일정기간 (예컨대 1년)에 조정에 의하여 이문제가 해결되지 못할경우에는 국제사법 재판소 제소에 동의할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수 없는것으로 조정의 성과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수 있는것으로 해결불능한 경우를 상정하여 사전조치를 취하여둔다는 것은 말이되지않음.

5. 아죽으로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수락할수없는것인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1) 일본이 제 2 차 길. 오미타 회담에서 김부장에게 수고한 문서에는 예도 적되어 있듯이 국사체에서의 징승은 최대 2년이내에는 특별이 가려지는것임.

1143

0360

● CONFIDENTIAL ●

회
밀
CONFIDENTIAL

(2) 연 국사재의 구성을 보면 일관은 "다나끼" (전 최고재판관)

가 한사로 선출되어있어 그의 영향력이 상당할것이 예상되어 사전내용의 장단에 불구하고 그 분위기에 있어 우선 아족에 불리함.

(3) 국사재 규정 제 41 조에는 장승당사자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는바 일관은 이를 원용하여 판결전에라도 아족의 독도상의 시설 및 권리원들을 침해시킬 조치를 취할수 있음.

(4) 특히 아족에 정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줄 결과를 초래하지도 모르는바 이는 규정 제 62 조에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인정되는 국가는 재판에의 참가를 요청할수 있는바, 북한괴뢰가 이를 원용하여 아족의 입장을 난서깨할 가능성의 없는것도 아님.

(5) 따라서 판단계에서 국사재 제소에 대한 언질을 주는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

6. 결론으로 아족으로서는 어디까지나 "제 3국에 의한 거중조정 (Mediation)에 의한 해결방안을 고집하여 나갈것이며, 이의 성과는 그때 가보아야 알수 있는것이라는 이유 하에 사전에 국사재 제소에 관한 언질은 줄수없는것으로 사로됨.

306

1144

0361

회
밀
CONFIDENTIAL

대한민국외무부

작신암호전보

관리 번호	65-5
----------	------

급 비밀
CONFIDENTIAL

번호: JAW-01051

수신인: 외도부장관

발신인: 주일대사

가	월	일	1842	동
급	비	밀	10	독
우	우	밀	10	주
일	일	화		화

본작은 "우시바" 수석 대표 대리의 초대로 금 7일 12:30 - 14:30에 주식을 같이 하면서 회담한 바 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 보고함. (방의공사, 우시로구 아세아국장 등식)

1. 수석 대표간 비공식 회담.

작년 말에 일족으로부터 비공식으로 계의가 있었던 수석 대표가 비공식 회담에 관하여 본작은 우선 1. 18.의 본회담 재개전에 태도 1차 회합하여 회담 진행 방식에 관하여 협의도록 하고 재개후에도 최소 주 1회 전기적으로 회화하되, 그 외에도 각 분과 위원회의 토의가 난관에 부딪칠 경우에는 그 때마다 수시 비공식으로 회합하여 관계 분과 위원회의 양측 수석 위원도 참석시켜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보다 고차적인 견지에서 해결도록 하자고 하였던 바 일족은 이에 전폭적으로 찬동한다는 답변이 있었음.

2. 한일 회담의 운영 방식.

본작은 일족이 종래 어업문제에 지나치게 중점을 두고 어업위원회의 진행도와 견주어 여타 위원회를 진행시키려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는 바, 재개회담에 있어서는 일단 대체적인 타결을 2월 말까지 이루자는 목표 아래 회담을 진행시키되 적어도 비교적 해결이 예상한 기본 과정 및 법적 지위는 협정초안 완성 까지 이끄러 가도록 하고

비서	아주	통상	상공	청와대
총무	구미	경기	농림	총리
의전	정문	국방	조달	공보부
여권	방교	증정	공보관	

수신시간:

1965 7 8 AM 10:36

급 비밀
CONFIDENTIAL

의신파
205

0611

353
207

III 금 / 비밀
CONFIDENTIAL

2

그 때까지 어업문제의 타결을 보지 못하면 예전에 정치회담 등 새로운 진행방법안을 모색하도록 할이 어떤 가고 하였을. 이에 대하여 일측은 이제까지 의식적으로 어업위원회의 전건을 태워위원회와 관련시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특히 대장성등이 어업문제의 대강 타결에 관한 명확한 전망이 타도서치 않는 한 토의에 응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외무성이 난처한 입장에 있다고 하면서 일측도 본적이 말한바와 같이 같은 특포로 회담을 진행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을. 이와 관련하여 일측은 종래 어업, 청구권의 양문제에 끼워 비교적 ① 측 입장의 접근이 용이한 법적지위 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해온다. 한국측이 종 태입장을 번복하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일시 경제되었으나 종 태합의선에 따라 토의해나가면 응이익의 괴리를 볼수 있을지도 생각하며 앞으로는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외무성이 독자적으로 진행시킬수 있는 기본과제위원회에 서도 적 역할을 담당시키고 토의를 치해해나가자는 의거를 표명 하였을.

3. 어업문제

어업문제에 관하여 기본 이규성 수석위원이 와다 대표와 비공식으로 맞난자리에서 교환하였든 의견이 일부신문지상에 한국측의 새로운 구상으로 보도되고 있는 대안 일측의 반응을 탐진하면서 본직은 한국측이 국내대책상, 명목도 중요하나 그렇다고 실의도 버리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고 양측의 입장은 다같이 설명 날득 시킬수 있는 흐름을 생각해낼수 없겠는가고 하였든 바 일측은 자기측도 사사사 떠도과, 설의의 약속이 다이틀 약보하는 데 학계가 있어 약속 하나로 저녁 버리기 어려운

III 금 / 비밀
CONFIDENTIAL

0612

354

III 금 비밀
CONFIDENTIAL

입장에 있다하면서 본직이 시사한 방도에 관하여는 계속 연구 해보자는 태도를 보였음.

4. 일회상 방안문제.

일족은 아직도 일정이나 수원등을 정하기 어려운 상태라면서 수상 방미 직후부여 구체적으로 추진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5. 독도문제.

본직은 제 2차 본회답시에 "우서바" 수석대리가 독도문제를 국교정상화와 결부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나 본직의 의견으로는 일족 태도가 진실로 그렇다면 한일 국교정상화가 불가능 할 것이며 이는 일본이 양국의 국교수립을 위하는 것보다 영토적 야망이 강하다는 인상을 줄 것이라고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족은 과거 이문제를 가지고 수상이나 외상이 국회에서 국교정상화와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계속 하여온 경위에 비추어 국교사에 이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다도 두엇이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으로 투표 거역하고 하면서 과거 한국쪽으로부터 국제사법 재판소 제시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고 있어 이는 납득하나 한국측이 비공식으로 시사한 바 있는 기증조정은 해결의 전망이 두엇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고 미연구 해보겠다고 하였음.

6. 동남아 외상회담 예비회담.

로 기회답에의 일본의 칠석에 관하여서는 정부지시 (외아날 721.1-701, WJA-12223, WJA-01007)에 따랐다 회담의 성격, 이에 ~~까지~~ ^{경위등을} 재설명하고 ~~설명~~

III 금 비밀
CONFIDENTIAL
355

0613

III. 금 비밀
CONFIDENTIAL

- 4 -

일족의 활약을 중용한바 일족은 지난 11. 14.의 본적과 시이나 외상간의 면담
결과에 언급하면서 (찰조: JAW -11317 3항) 그 이상 명확한 답변은 피하였음.
(이와관련하여 일족은 예비회담이 방콕에서 개최될 경우 초청자가 누가될것인가를
문의하여온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

7. "다카스기" 수석대표와의 회담.

본적은 "다카스기" 수석과 1640년 8월 16일에 "시이나" 외상실에서 외상 소개로
초대되었던 예정일. (주일정- 외아부)

예고: 재분류 67. 12. 31.

전으로 재분류 (67) 12월
과장 최 광 수

356

0614

III. 금 비밀
CONFIDENTIAL

208 의 신 과

대한민국 외무부

TOP URGENT

번호: JAW-06392

착신전보

일시: 171819

수신인:

장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발신인:

수석 대표 김대중



참조: 국무총리, 청와대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금 17일 오후 4 시 우시바 심의관으로부터 독도 문제 처리에 관한 일본측 공식 제안을 받았음. 본작과 우시바 심의관과의 티의 내용은 별도 (JAW -06393) 보고함.
동 일측안은 주 협정 전반에 관한 분쟁 처리안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965. 6. 17

일본국과 대한민국과의 간의 본래 해결에 관한 의정서 (안)

일본국과 대한민국은.

양국간의 모든 본래의, 국제연합 헌장의 원칙에 따라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국제
평화 안전 및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해결되어야 한다고 확망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
하였다.

제 1 조

양체약국간의 모든 본래은, 금일 서명된 모든 조약 또는 협정의 해석 또는 실시에
관한 분쟁 및 독도에 대한 주권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로 한다.

비서	✓	아주	○	통상	상공	청와대	✓
충무		구미		경기	농림	총리실	✓
외전		정운	✓	국방	조달	재무부	
여권		방교		증정	공보관	공보부	

접인:

송신시간:
1965. 6. 17. 18:19:12

0789

360

510

362

- 2 -

제 2 조

- 제 1 조의 규정에 따랐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다른 평화적 방법에 의한 해결이 양국 정부간에 있어서 합의되지 않는 한 제 3 조의 규정에 기하여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위하여 부탁되는 것을 한다.
- 중재위원회는, 양국 정부가 분쟁의 부탁에 관하여 해결하게 되는 중재계약으로 별단의 합의를 행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 법의 원칙 및 적용이 있는 조약 규정에 따랐서, 부탁된 분쟁에 관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 중재 위원회는, 3인의 중재위원으로서 구성된다.
- 각 체약국의 정부는,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정부가 다른 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부탁된 중재 부탁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내에, 각 1인의 중재 위원을 지명하기로 한다.
- 제 3의 중재 위원은, 2의 규정에 따랐서 지명된 2인의 중재 위원이 2에 정하는 기간후의 30일의 기간내에 합의에 의하여 행하는 선정에 기하여, 또는 동 기간내에 그 2인의 중재 위원이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제 3국의 정부가 행하는 선정에 기하여, 지명되는 것으로 하고, 중재 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단, 제 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 중 어느 쪽의 국민이어서는 안된다.
- 어느 일방의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내에 중재위원을 지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 3의 중재위원이나 제 3국의 선정에 관하여 당해 기간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중재위원회는, 각 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후의 30일의 기간내에 각각 선정하는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 위원 및 이를 제 3국의 정부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다른 제 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 3의 중재 위원을

의 신과

511 19 11 17 08 12

0790

위원으로서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1. 중재위원회의 결정은 모든 중재위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2. 양 체약국의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기하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최초 조항)

(총의 의사록)

제 3 조 제 4 항에서 말하는 "각국 선정하는 제 3 국" 및 "이들 제 3 국의 정부가
합의하여 선정하는 다른 제 3 국"은, 일본국 및 대한민국, 쌍방과 외교 관계를
갖는 국가 중에서 선정되는 것으로 한다.

(주일정-의아록)

의 신 과

362

11

512

1947. 9. 12

0791

대한민국 외무부

작신암호전보

지급

CONFIDENTIAL	
중	밀

번호: JAW-06550

일시: 222158

판리	
번호	65-719

수신인: 국무총리

발신인: 외무부장관·주일대사

참조: 대통령 비서실장, 중앙정보부장, 외무부 차관.

1. 금 22 일 17:00 시 예정대로 한일간 제 한안에 본조안을 완료하였습니다.
2. 특도문제는 이미 보고 온 진바화들이 시이나 회상과의 제2차 회담(금일 11:00 시 - 13:15 시)에서 특도는 아울의 고우한 영토라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관찰시키는 마음과 같은 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양해문안 합의에 성공하고 그 후 있을 교환공문 형식으로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양국정부는 벌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의하여 해결할 수가 없을 경우에는 양국정부가 합의하는 결자에 따라 조정에의하여 해결을 도모한다"
3. 참가한 인증 "양국간의 분쟁"이라는 어구에는 특도문제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것은 장애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제한을 의미한다는 우리의 입장에 대하여 금일 16:15 시 사표 내각총리대신과의 면담서 등 통리대신으로부터 구두 보장을 받았으며 따라서 일본정부는 우리정부가 장래의 문제를 의미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하여 만약 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또한 사표 통리대신으로부터 보장을 받았습니다.

비서	C/아주	통상	상공	정외대	당 당과	상국	총	차 관	장	판	공
총무	구미	경기	농림	총리	2	2	56	2	56	1	1
의전	전문	국방	교 dục	공보부	3	3	56	3	56	1	1
여권	방교	증정	공보관		4						

외신과

401

CONFIDENTIAL	
--------------	--

~~비밀~~
따라서 정부로서는 푸드를 제역 관하여 중대의 입장은 그동안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계속 우리 입장은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일간문서로 2월 20. 07. 14. 31.

3. 배용경과 함께 거시한바 있는 한반 이업 문제는 둘 이업이 자주 규제되는 그 성격상 특기 일본으로서는 어려운 서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나" 회장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쓰쓰로 사가미" 농상과의 접두으로 이후 이전 내용을 "도의 기록" 형식으로 확보 했으므로 우리와의 이의를 성취하였습니다. 끝.

5/24 8

의 일 파



413

402

403